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 (신설)</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 4. (제정안과 같음) 5. 관리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때까지 적용)</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u>거창군건축조례 제38조</u>에서 정한면적 이상으로 한다.</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u>거창군건축조례</u></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u>정할 수 있다.</u></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제정안과 같음) ② <u>정한다.</u></p>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u>제72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u>제72조제1항</u>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u>제72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u>제72조제1항</u>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p>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p>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이하 생략)</p>	<p>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정안과 같음)</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p> <p>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 의 단독주택</p> <p>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p>	(삭제)
<p><u>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문화지구</p> <p>6. 보행자우선지구</p> <p>7. (생략)</p>	<p><u>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4. (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5.(제정안과 같음)</p>
<u>제54조 ~ 제58조</u> (생략)	<u>제53조 ~ 제57조</u> (제정안과 같음)
<p><u>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u></p> <p>① (생략)</p> <p>1.~14. (생략)</p> <p>15. 생산녹지지역 : <u>60퍼센트</u>이하</p> <p>16.~21. (생략)</p> <p>② (생략)</p>	<p><u>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u></p> <p>① (제정안과 같음)</p> <p>1.~14. (제정안과 같음)</p> <p>15. 생산녹지지역 : <u>80퍼센트</u>이하</p> <p>16.~21.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u>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u> (생략)	<u>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u>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p> <p>① (생략)</p> <p>1. (생략)</p> <p>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u>건축물</u></p>	<p>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p> <p>①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p> <p>..... <u>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제62조~제76조 (생략)</p>	<p>제61조~제75조(제정안과 같음)</p>
<p>부칙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u>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은 별표2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부칙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p> <p>.....</p> <p>.....</p> <p>.....</p> <p>..... (단서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u>동호 나목, 사목, 아목, 차목, 타목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u>)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u>동호 나목의 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u>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u>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u> 15. (생략)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u>(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u>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u>오피스텔</u>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14. <u>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u> 15.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판매 및 영업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u>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u>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u>위험물저장시설중 너비15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액 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u>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u>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u> 15. (생략) 16. (생략)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판매 및 영업 시설중 <u>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u>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중 (삭 제) 주유소..... 14. <u>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u>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중 <u>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게임제공업소</u>(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u>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u>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u>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u> 세차장 15. (생략) 16. (생략)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중 <u>소매시장·상점</u>(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u>(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u> 13. (삭제) 14. <u>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u>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u>(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u>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u>(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것에 한한다)</u> 13. (삭제) 14.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17.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li style="padding-left: 20px;">(신설) 17. (생략) 18. (생략)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17.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것</u> 18. (제정안과 같음) 19.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p><u>(신설)</u></p>	<p>【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u>
<p>【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생략)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생략) 	<p>【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u>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u> 12. (제정안과 같음) 1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u> 14.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중 <u>종교집회장, 동·식물원</u>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18. (생략) 19. (생략) 	<p>【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17. (제정안과 같음) 18. (제정안과 같음) 19. (제정안과 같음)
<p>【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동호 <u>마목 내지 아목</u>에 해당 하는 것 9. (생략) (신설) 	<p>【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u>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u> 9. (제정안과 같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u>묘지관련시설</u>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 (신설)</p> <p>4. (생략)</p> <p>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동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7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6. (생략)</p> <p>7. (생략)</p> <p>8. (생략)</p> <p> (신설)</p> <p>9. (생략)</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4.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u></p> <p>5. (제정안과 같음)</p> <p>6.</p> <p>.....</p> <p>.....</p> <p>.....</p> <p>.....</p> <p>.....</p> <p>7. (제정안과 같음)</p> <p>8. (제정안과 같음)</p> <p>9. (제정안과 같음)</p> <p>10.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u></p> <p>11. (제정안과 같음)</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u>제9호의 1</u>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p> <p>.....</p> <p>.....</p> <p>..... <u>제10호</u></p> <p>.....</p> <p>.....</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중 동호 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u>바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u>(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것</p> <p>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u>중 종교집회장</u></p> <p>6. ~ 7. (생략)</p> <p>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u>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u> 해당하는 것</p> <p>9. (생략)</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이하 생략) 가. 별표15 <u>제7호</u>의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생략)</p> <p>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16. (생략)</p> <p>17. (생략)</p> <p>18. (생략)</p> <p>19. (생략)</p>	<p>4. <u>바목, 사목, 아목,</u></p> <p>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u>문화 및 집회 시설</u></p> <p>6. ~ 7. (제정안과 같음)</p> <p>8.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u></p> <p>9. (제정안과 같음)</p> <p>10. (제정안과 같음)</p> <p>11. 가.<u>제8호</u>..... (제정안과 같음)</p> <p>12. (제정안과 같음)</p> <p>13. (제정안과 같음)</p> <p>14. (제정안과 같음)</p> <p>15. (제정안과 같음)</p> <p>16. (제정안과 같음)</p> <p>17. (제정안과 같음)</p> <p>18. (제정안과 같음)</p> <p>19.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1. (생략) 2. (생략) <u>(신설)</u> 3. (생략) 4. (생략)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u>마목 내지 아목</u>에 해당 하는 것 <u>(신설)</u> 6. (생략) 7. (생략)</p>	<p>【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중 종교집회장</u>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u>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u>.... 7.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u>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u>신설</u>) 13. (생략) 	<p>【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제정안과 같음) 11.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1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u> <u>쓰레기 처리시설</u> 14.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관련)</p> <p>※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3호 중 휴게음식점, 4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8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별표18 제5호 및 별표19 제9호의 공장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p>【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 제1항관련)</p> <p>※제3호.<u>휴게음식점과 제4호</u>.....<u>제9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10. <u>제6호</u> <u>제11호</u> 11.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16.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4】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본 조례시행이전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제)

용도구역 구분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용도
허용건축물	별표3의 제1종일반 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별표6의 준주거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별표13의 준공업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별표16의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할수 있는건축물
높이제한	3층이하	4층이하	3층이하	3층이하
건 폐 율	60퍼센트 이하	60퍼센트 이하	70퍼센트 이하	20퍼센트 이하
용 적 율	15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하	15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